

## ●기획재정부공고 제2023-100호

「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규칙」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‘행정절차법’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
2023년 05월 08일

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

### 「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규칙」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#### 1. 개정이유

「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」에 따르면, 양허관세가 적용되는 시장접근물량과 관련하여 생산기반 취약 등 구조적인 요인으로 농림축산물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경우 이를 해소하고 관련 국내 산업을 보호하며 외화 획득용 원자재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그 시장접근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, 국내 농림축산물의 수급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양파에 대한 시장접근물량\*을 20,645톤에서 40,645톤으로 늘려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려는 것임.

\* UR 협상 당시 일부 수입제한 농림축산물에 대해 높은 관세율로 양허하면서 최소한의 시장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설정된 물량으로, 시장접근물량에 대해서는 저율관세, 초과물량에 대해서는 고율관세 부과

#### 2. 주요내용

양파의 시장접근물량을 현행 20,645톤에서 40,645톤으로 20,000톤 증량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

#### 3. 의견제출

이 일부개정령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5월 11일(목)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(참조 : 산업관세과, 전화 044-215-4433 팩스 044-215-8076, 이메일 [customs21c@korea.kr](mailto:customs21c@korea.kr))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(30112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,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

- 전자우편 : [customs21c@korea.kr](mailto:customs21c@korea.kr)

- 팩스 : 044-215-8076

※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ef.go.kr>) 「 → 법령 입법예고 」  
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#### 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(전화 044-215-4433, 팩스 044-215-8076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